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43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김원이ㆍ이해식ㆍ김남근

서영석 · 김선민 · 박지혜

전진숙 • 박홍근 • 김교흥

김동아 · 김태선 · 이기헌

의원(12인)

제안이유

현재 철도유휴부지 및 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으로 분포한 철도 유휴부지 2,566만㎡ 중 64.1%에 해당하는 1,646만㎡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 유휴부지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

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철도유휴부지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 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 나.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 다.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하는 등의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안 제3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철도유휴부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 가. 철도시설의 건설로 이전된 기존의 철도시설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철도시설의 부지로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않는 부지(「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이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 나.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 13.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이하 "활용사업"이라 한다)이란 철도유 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철도유휴부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제35조의2에 따라 활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을 말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5조의2(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관할구역에서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계획(이하 "활용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활용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활용사업의 명칭,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 활용사업의 대상지역 · 위치 및 그 면적
 - 3. 활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철도 유휴부지의 이용방법
 - 4.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 5. 그 밖에 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이를 변경승인하려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용사업계획의 작성, 승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3(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철도유휴 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

산법」에도 불구하고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 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 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유휴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및 대부기간 등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철도유휴부지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유휴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2. "철도유휴부지"란 다음 각</u>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u>.</u>
	가. 철도시설의 건설로 이전
	된 기존의 철도시설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
	된 철도시설의 부지로서
	무지(「철도지하화 및 철
	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이용되는 부지는 제외한
	<u>다)</u>
	나.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외
	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신 설>

<신 설>

13.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이하 "활용사업"이라 한다) 이란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하 기 위하여 해당 철도유휴부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 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제35조의2에 따라 활 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5조의2(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관할구역에서 철도유휴 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계획(이하 "활용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활용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활용사업의 명칭, 목적, 필요

성 및 기대효과

- 2. 활용사업의 대상지역·위치및 그 면적
- 3. <u>활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u> 철도 유휴부지의 이용방법
- 4.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재원 조달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 5. 그 밖에 활용사업의 시행을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이를 변경 승인하려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용사업계획의 작 성, 승인, 시행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3(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철 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 하고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 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휴부지 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유휴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및 대부기간 등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철도유휴부지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 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 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사용하려는 경우에 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 고 철도유휴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